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leeck@kiep.go.kr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kiep.go.kr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ydkang@hufs.ac.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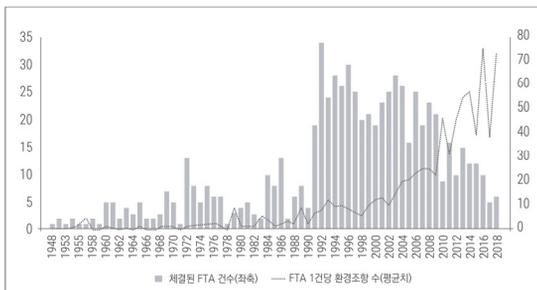
- ▶ 환경보호 및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FTA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이 확대·심화되는 추세
-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 환경·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 강화 노력 또한 지속될 전망
 - 미국은 TPP 협상, USMCA 등에서 일관되게 제재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 옴.
 - 반면 EU는 대화·협력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 왔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환경·노동 의무 확보를 위해 TSD 챕터상의 협의·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2월 말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로 인해 한·EU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이행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기는 하나, EU 측이 △환경·노동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FTA 정지·종료 △무역장벽규정(TBR)에 근거한 무역조치 △EU GSP 무역특혜 철회 △통상감찰관제도(CTEO) 및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한 무역조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 기후·통상정책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 국제 기후·환경 의무 불이행국에 대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부과를 대선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무역구제(특히 상계조치)를 기후문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함.
 - 대미(對美) 수출품목 중 우리 배출권거래제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 공여받고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여지 검토 및 미국 내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다자환경협정(MEAs)의 국내적 이행 촉진에 FTA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 FTA 당사국간 환경사안 관련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환경법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당사국 상호 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준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FTA의 양적 팽창과 함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 또한 확대·심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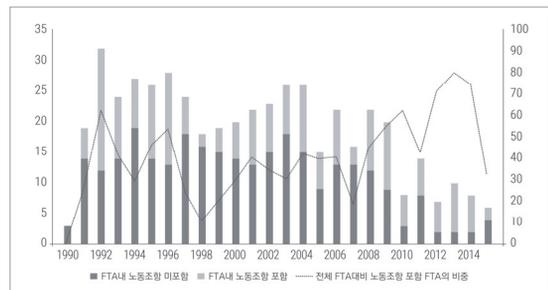
- 특히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무역에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非)무역적 사안을 규율하는 FTA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단순한 선언이나 기존 국제협정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FTA 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 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 선박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 위반행위로 인해 미 국가해양수산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건을 계기로 2019년 9월 19일에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챗터에 근거, 한국에 환경협의를 요청
 - 2018년 12월 17일에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챗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

그림 1. FTA 체결건수 및 환경규범의 포함 빈도 (단위: 건)



자료: Brandi et al.(2020), "Do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Make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Greener?" p. 3.

그림 2. FTA 체결건수 및 노동규범의 포함 빈도 (단위: 건, %)



자료: Raess and Sari(2018), "Labor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LABPTA): Introducing a New Dataset," p. 445.

●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 CPTPP, USMCA 등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과 우리나라 기체결 FTA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FTA 환경·노동 규범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 이를 바탕으로 △향후 FTA 신규 또는 개정 협상에서 타방 당사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노동 규범을 주장할 경우 FTA에의 반영 수준 및 방식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선제적 검토가 필요

- 특히 한·미 FTA 제20장과 한·EU FTA 제13장에 따라 진행된 미국, EU와의 환경·노동 협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항들에 주목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목적을 수행

-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방향을 미국·EU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i) FTA 환경·노동 의무 자체에 대한 강화 가능성과 (ii) FTA 환경·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강화 가능성에 비추어 전망하고,
- FTA 환경·노동 규범의 확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함.
 - 특히 기후변화 문제가 향후 FTA 환경규범의 추가적인 확대·발전과 관련하여 일정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여 시사점을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① 미국의 FTA¹⁾

● 미국의 FTA에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연계하여 체결된 북미 노동협력협정(NAALC)이 최초임.

- NAFTA 이후의 무역협정에는 협정 본문에 환경 조항이 규정되었으며, FTA 당사국간의 환경분쟁이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
 - 피소국의 환경의무 위반으로 인해 FTA 당사국간의 무역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중재패널이 판정을 내리는 경우 승소국에 의한 양허정지 가능

② EU의 FTA²⁾

● EU FTA가 가지는 특징은 △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대화·협력 메커니즘 △FTA 일반분쟁 해결제도와 구별되는 TSD 챕터 특별분쟁해결제도임.

1) 미국은 14건의 양자무역협정 체결·유지 중 미·호주 FTA, 미·바레인 FTA, CAFTA-DR, 미·칠레 FTA, 미·콜롬비아 TPA, 미·이스라엘 FTA, 미·요르단 FTA, 한·미 FTA, 미·모로코 FTA, 미·오만 FTA, 미·파나마 TPA, 미·페루 TPA, 미·싱가포르 FTA, USMCA.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기준. WTO RTA Database, <https://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검색일: 2020. 11. 24).

2) EU는 51건의 양자무역협정 체결·유지 중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기준. *Ibid.*

- [TSD 챕터] 한·EU FTA에서 TSD 챕터가 최초 도입된 이래, EU가 체결하는 무역·투자협정에는 환경·노동 의무가 ‘패키지화’되어 TSD 챕터에 반영되어 옴.
 - EU·캐나다 CETA의 경우 TSD 챕터가 일부 변형된 형태로 채택, 제22장 TSD 챕터 외에 ‘무역과 노동(Trade and Labour)’에 관한 제23장,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에 관한 제24장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총 3개 챕터를 둬. 이러한 유형은 현재까지 EU·캐나다 CETA가 유일
 -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 EU·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처음으로 파리협정이 언급³⁾
- [대화·협력 메커니즘]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 TSD 챕터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이 포함
- [별도의 분쟁해결제도]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를 규정
 - TSD 챕터 분쟁해결제도는 협의 및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등 2단계로 구성
 - 다만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 부과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아 TSD 챕터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옴. FTA 환경·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취하는 ‘제재’ 중심의 접근법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임. 미국이 체결하는 FTA의 환경·노동 챕터는 동 협정에 따른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대상인 반면, EU는 TSD 챕터를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 옴.

표 1. EU FTA의 TSD 챕터 포함 현황

구분	협 정	(잠정) 발효연도	구분	협 정	(잠정) 발효연도
1	한·EU FTA 제13장	2015	7	EU·캐나다 CETA 제22장	(2017)
2	EU·중미 AA 제8편	(2013)	8	EU·아르메니아 CEPA 제9장	(2018)
3	EU·안데안공동체 ⁴⁾ TA 제9편	(2013)	9	EU·일본 EPA 제16장	2019
4	EU·조지아 AA 제13장	2016	10	EU·싱가포르 FTA 제12장	2019
5	EU·몰도바 AA 제13장	2016	11	EU·베트남 FTA 제13장	2020
6	EU·우크라이나 DCFTA 제13장	2017			

주: 1) () 안은 아직 잠정적용 중인 무역협정의 발효연도를 의미함.

2) AA는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TA는 무역협정(Trade Agreement), DCFTA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CETA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의미.

3) 그 외에 EU·멕시코 AA(2000년 발효, 2006년 현대화 협상 이래 2018년에 협정의 무역 관련 규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달),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2019년 6월 28일 정치적 합의 도달)에 TSD 챕터가 포함될 전망.

자료: European Commission, "Negotiations and agreements - Implementing EU agreements,"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검색일: 2020. 6. 10)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3) EU·일본 EPA 제16.4조 제4항.

4) CAN(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③ 우리나라의 FTA⁵⁾

- 우리나라가 초기에 체결한 FTA에서는 전문에 환경 또는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하거나⁶⁾ 환경협력,⁷⁾ 환경관련 예외조항⁸⁾ 등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정도였으며, 실제적 내용을 가지는 환경의무나 환경 챗터가 협정 내 포함되지는 않음.
- 발효시를 기준으로, FTA에서 환경 챗터를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구성한 것은 우리나라 기체결 FTA 중 한·EU FTA가 최초임.
 - 이후 체결된 FTA에서는 분쟁해결절차, 정보공개, 대중 참여 등 환경 챗터의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강화한 조항들이 포함되면서 환경 챗터의 범위와 수준이 한층 높아짐.
 -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기발효 FTA 17건 중 환경 챗터 또는 TSD 챗터를 가지고 있는 FTA가 11개,⁹⁾ 환경 또는 TSD 챗터가 없는 FTA가 6개¹⁰⁾임.

표 2. 우리나라 기발효 FTA 환경규범의 주요 구성요소

	FTA 상대국 (발효)	별도 챗터 유무	전문상 언급	환경 예외	대중참여· 자문	환경협력	정보교환	MEA 이행의무	환경법 이행의무	분쟁해결 제도
1	칠레(2004)	X	○	○	X	○	X	X	X	X
2	싱가포르(2006)	X	X	○	X	○	X	X	X	X
3	EFTA(2006)	X	○	○	X	X	X	X	X	X
4	ASEAN(2009)	X	X	○	X	○	○	X	X	X
5	인도(2010)	X	○	○	X	○	○	X	X	X
6	EU(2011)	○	○	○	○	○	○	○	○	○
7	페루(2011)	○	○	○	X	○	○	○	○	△
8	미국(2012)	○	○	○	○	○	○	○	○	◎
9	터키(2013)	○	○	○	X	○	○	○	○	○
10	호주(2014)	○	○	○	X	○	○	○	○	△
11	캐나다(2015)	○	○	○	○	○	X	○	○	○
12	중국(2015)	○	○	○	X	○	○	○	○	X
13	뉴질랜드(2015)	○	○	○	○	○	○	○	○	X

5)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6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 우리나라 FTA - 현황」,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검색일: 2020. 12. 27).

6)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전문, 한·EFTA FTA 전문, 한·인도 CEPA 전문 등.

7)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FTA 제18.9조, 한·ASEAN FTA 기본협정 제11조 제2항.

8)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제20.1조, 한·싱가포르 FTA 제21.2조, 한·EFTA FTA 제2.13조 등.

9) 한·EU FTA 제13장(TSD), 한·페루 FTA 제19장(환경), 한·미 FTA 제20장(환경),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장(TSD), 한·호주 FTA 제18장(환경), 한·캐나다 FTA 제17장(환경), 한·중 FTA 제16장(환경과 무역), 한·뉴질랜드 FTA 제16장(환경), 한·콜롬비아 FTA 제16장(TSD), 한·중미 FTA 제17장(환경), 한·영 FTA 제13장(TSD).

10) 한·EU FTA 이전에 체결·발효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그리고 한·EU FTA 이후 체결·발효한 FTA 중에는 한·베트남 FTA가 유일함.

표 2. 계속

	FTA 상대국 (발효)	별도 챗터 유무	전문상 언급	환경 예외	대중참여· 자문	환경협력	정보교환	MEA 이행의무	환경법 이행의무	분쟁해결 제도
14	베트남(2015)	X	X	○	X	X	X	X	X	X
15	콜롬비아(2016)	○	○	○	○	○	○	○	○	X
16	중미(2019)	○	○	○	○	○	○	○	○	△
17	영국(2020)	○	○	○	○	○	○	○	○	○

주: 1) 구성요소 중 '분쟁해결제도'는 FTA 분쟁해결 챗터에 따른 일반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환경 챗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 x는 그러한 분쟁해결제도 회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협정상 없는 경우, △는 그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없이 당사자간 협의만을 규정한 경우를 의미.

2) [표 2]는 구성요소 중 '환경예외'를 광의로 해석하여, 적극적 항변사유로서의 GATT 제XX조 제(b)항 환경예외 유형뿐 아니라 환경조치가 해당 협정하에서 허용됨을 원론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예: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및 적용배제 조항(예: "환경 등 정당한 공공목적을 위해 고안·적용되는 조치는 ...를 구성하지 않는다")까지를 환경예외 범주로 분류함.

3) 구성요소 중 '대중참여'는 국내환경법상의 대중참여가 아닌 FTA 환경 챗터에의 참여를 의미함.

자료: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되 저자가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 한국법학회(2013), 『주요국의 FTA환경협정 분석을 통한 환경법의 선진화 방안』, p. 22,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 박정준, 심수진, 박수령(2020), 「국제통상체제 하 환경규범 발전과 대한국 시사점」, 『무역통상학회지』, 제19권 제5호, p. 42. 각 구성요소 유무 판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본 연구의 [부록 1]을 참고.

2) FTA 환경 챗터의 최근 동향

① CPTPP 제20장 환경 챗터

● [규율범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문제를 규율

- (i)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소비·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¹¹⁾ (ii)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서의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¹²⁾ (iii)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장려할 의무¹³⁾ (iv) CPTPP SPS 위원회와 함께 침입외래종의 이동·예방·감지·통제·박멸을 위해 공동된 노력을 보일 의무¹⁴⁾ (v)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된 노력의 중요성¹⁵⁾ (vi) 어업관리 시행 노력 의무¹⁶⁾ 및 일정 유형의 수산보조금 공여·유지 금지 의무¹⁷⁾ (vii) 야생 동식물의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¹⁸⁾를 규정
- 특히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i) 과잉어획(overfished)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업에 공여되는 보조금¹⁹⁾ 및 (ii)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된 어선에 공여되는

11) CPTPP 제20.5조 제1항.

12) CPTPP 제20.6조 제1항.

13) CPTPP 제20.13조 제2항.

14) CPTPP 제20.14조 제2항.

15) CPTPP 제20.15조 제1항.

16) CPTPP 제20.16조 제3항.

17) CPTPP 제20.16조 제5항.

18) CPTPP 제20.17조 제2항.

19) CPTPP 제20.16조 제5항 제(a)호.

보조금²⁰⁾을 선제적으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 데 의의가 있음.

- 향후 다자·양자 수산보조금 규범 형성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으로서 CPTPP가 참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USMCA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규정됨.

● [실체적 의무] 환경보호에 관해 다음의 의무를 규정

- 구속력 있는 의무로서, (i)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추구²¹⁾ (ii) 자국 국내 환경법의 실효적 집행 및 무역·투자 촉진 목적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 하향조정 금지²²⁾ (iii) 자국 환경법에 관련된 절차적 투명성²³⁾ (iv) 대중 참여 촉진²⁴⁾ 등을 규정

● [집행 가능성] CPTPP 환경 챕터는 동 협정의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음.

- 당사국 사이의 환경협²⁵⁾ → 고위대표급 협²⁶⁾ → 각료급 협²⁷⁾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CPTPP 제28장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

② USMCA 제24장 환경 챕터

● NAFTA가 환경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최초의 무역협정이라 한다면, USMCA는 그에 기초해서 환경조항을 추가 발전시킴.

- NAFTA와 달리 환경조항이 USMCA 협정문 내에 포함되었으며, 동 협정의 분쟁해결제도(제31장)가 환경 챕터에 적용

● [규율범위] 미국이 체결한 기존의 어떠한 무역협정보다도 광범한 환경문제를 규율

- 오존층 보호,²⁸⁾ 선박으로부터의 오염,²⁹⁾ 대기질,³⁰⁾ 해양쓰레기,³¹⁾ 무역과 생물다양성,³²⁾ 외래침입종,³³⁾ 해면어업,³⁴⁾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³⁵⁾ 해양생물 보호,³⁶⁾ 수산보조금,³⁷⁾ IUU 어업,³⁸⁾ 야생동

20) CPTPP 제20.16조 제5항 제(b)호. 한편 동 규정에 따라, IUU 어업목록 등재의 주체는 기국, 지역수산기구(RFMO), 또는 지역수산협정(RFMA)임.

21) CPTPP 제20.3조 제3항.

22) CPTPP 제20.3조 제4항.

23) CPTPP 제20.7조.

24) CPTPP 제20.8조 및 제20.9조.

25) CPTPP 제20.20조.

26) CPTPP 제20.21조.

27) CPTPP 제20.22조.

28) USMCA 제24.9조.

29) USMCA 제24.10조.

30) USMCA 제24.11조.

31) USMCA 제24.12조.

32) USMCA 제24.15조.

33) USMCA 제24.16조.

34) USMCA 제24.17조.

- 식물 불법포획³⁹⁾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⁴⁰⁾ 등
- [CPTPP와의 비교] CPTPP와 USMCA의 적용범위는 유사하나 실제적 의무의 수준에 있어 USMCA에 ‘CPTPP plus’ 수준의 실제적 의무가 다수 반영⁴¹⁾
- [한계] 환경의무의 적용범위와 내용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SMCA 환경 챕터의 규율범위에 기후변화가 포함되지 않아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 챕터의 다자환경협정 목록에 UNFCCC와 파리협정은 빠져 있음.

● [실체적 의무] 환경보호에 관해 다음의 의무를 규정

- 원칙적으로, (i)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추구⁴²⁾ (ii) 자국 국내 환경법의 실효적 집행⁴³⁾ (iii) 무역·투자 촉진 목적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 하향조정 금지⁴⁴⁾ (iv) 자국 환경법·정책이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할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⁴⁵⁾ (v) 다자환경협정(MEAs)의 실효적인 국내적 이행의무⁴⁶⁾ 등
- 부문별로, (i) 오존층에 대한 보호 및 보호 장려 의무⁴⁷⁾ (ii)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해양환경 보호 및 보호 장려 의무⁴⁸⁾ (iii)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당사국간 협력의무⁴⁹⁾ (iv) 인간·해양·연안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방지·감소 의무⁵⁰⁾ (v)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장려 의무⁵¹⁾ (vi) 상업적 목적의 포경의 원칙적 금지의무⁵²⁾ (vii) 일정 유형의 수산보조금 공여 금지 의무⁵³⁾ (viii) 야생동물 밀매를 규제하고 관련해서 법 집행을 강화할 의무⁵⁴⁾ (ix)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역량 및 제도 유지·관리 의무 및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의 교역을 촉진할 의무⁵⁵⁾를 규정

35) USMCA 제24.18조.

36) USMCA 제24.19조.

37) USMCA 제24.20조.

38) USMCA 제24.21조.

39) USMCA 제24.22조.

40) USMCA 제24.23조.

41) 다자환경협정의 이행, 수산보조금 규칙, 해양쓰레기 방지 및 저감 의무 등.

42) USMCA 제24.3조 제2항.

43) USMCA 제24.4조 제1항.

44) USMCA 제24.4조 제3항.

45) USMCA 제24.3조 제2항.

46) USMCA 제24.8조 제4항.

47)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소비·거리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 등. USMCA 제24.9조 제1항.

48)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상호 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 등. USMCA 제24.10조 제3항 제(a)항 내지 제(h)항.

49) USMCA 제24.11조.

50) USMCA 제24.12조.

51) USMCA 제24.15조.

52) 단, USMCA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자협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USMCA 제24.19조 제2항.

53)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장려 및 과잉어획(overfishing)이나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보조금의 통제, 감축, 궁극적인 철폐의무 등. USMCA 제24.20조.

54) USMCA 제24.22조 제6항 제(a)호 및 제(b)호.

- 특히 (i)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된 어선 또는 그 운항자에게 공여되는 보조금⁵⁶⁾ (ii) 과잉어획 (overfished)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업에 공여되는 보조금⁵⁷⁾을 금지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CPTPP는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된 어선에 공여되는 보조금'을 금지 → USMCA는 금지되는 수산보조금의 범위에 '선박운항자(operator)'에게 공여되는 보조금까지 금지보조금으로 포함시킴(즉 'CPTPP plus').

● 2019년 12월 10일 USMCA 개정의정서를 통해 2018년 11월 30일 서명된 USMCA상의 환경규범을 추가 개선함.

- 2018년 11월 30일 서명 이후, 미국 하원은 USMCA의 이행장치 강화와 노동·환경 기준의 개선 등 USMCA에 대해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노동 및 환경 규범, 의약품 등 미국 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한 USMCA 개정의정서에 2019년 12월 10일 서명
- 개정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 환경의무 위반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affecting trade or investment)는 추정 조항을 신설
 -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에 따라 미국과 과테말라 사이에 발생한 FTA 노동분쟁에서 미국이 위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 하였던 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ii) 다자환경협정 목록 확대 및 이행의무의 강화
 - 원 USMCA(2018. 11. 30)에는 다자환경협정(MEAs)의 실효적인 국내적 이행의무의 대상으로 CITES, MARPOL, 몬트리올 의정서 등 3개 환경협정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의정서를 통해 습지보존협약(람사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IATTC) 등 4개 다자환경협정이 MEAs 목록에 추가⁵⁸⁾
 - (iii) 분쟁해결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개선
 - NAFTA 제20장 분쟁해결제도는 패널위원 임명에 역선택(reverse selection)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일방 분쟁당사국이 패널위원 임명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음.
 - 문제는 원 USMCA에서도 NAFTA에서의 제도적 흠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임. 이에 USMCA가 환경 챕터하에서의 분쟁을 USMCA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

55) USMCA 제24.23조 제4항 제(a)호 및 제(b)호.

56) USMCA 제24.20조 제1항 제(a)호. 한편 동 규정에 따라, IUU 어업목록 등재의 주체는 기국, 보조금 공여 당사국, 지역수산기구(RFMO), 또는 지역수산협정(RFMA)임.

57) USMCA 제24.20조 제1항 제(b)호.

58) 한·미 FTA에 규정된 7개 MEAs와 동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AFTA에서와 동일한 고의적 패널 절차 저지 또는 절차 지연이 예상되며 향후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USMCA 개정의정서는 패널 설치 이전에 자유무역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피소국이 패널위원 추천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동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이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

③ EU·캐나다 CETA 제22장 TSD 챕터 및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

- CETA에는 환경규범이 두 개 챕터 즉 제22장(TSD 챕터) 및 제24장(무역과 환경 챕터)에 걸쳐 규정
 - 제22장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위원회(CTSD)의 설립과 기능, EU·캐나다 공동의 시민사회 포럼(joint CSF) 회의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등 제23장(무역과 노동)과 제24장(무역과 환경)에 적용될 제도적 규칙을 마련
 - 제24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CETA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규제권 및 보호 수준	· 무역과 환경 챕터는 EU와 캐나다가 자신의 환경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수준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을 인정 · 자신의 국내법과 정책하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노력하고, 자신의 환경 법·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할 것을 약속
다자환경협정상 의무 재확인	·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데 다자환경협정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고, 양 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다양한 다자환경협상의 의무를 재확인
실효적 집행 및 이탈금지조항 (Non-derogation)	· 자국의 국내 환경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무역이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환경법을 면제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됨을 약속
구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	· 무역과 환경 챕터는 당사자의 환경법 위반에 대해 국내 구제절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 · 환경법·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의무 부담
산림제품 및 수산제품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교역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수산업 및 수산양식업을 촉진할 것을 약속
협력	· 환경 상품·서비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무역 관련 환경 이슈에 관해 협력할 것을 약속
분쟁해결	· 무역과 환경 챕터하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에 관해 양 당사자는 협의할 수 있으며, 협회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전문가패널을 설치할 수 있음. · 전문가패널은 문제된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동 보고서는 대외적으로 공개

자료: Government of Canada, “Chapter Summaries: 24. Trade and Environment,”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eta-aecg/chapter_summary-resume_chapitre.aspx?lang=eng#a24(검색일: 2020. 7. 17)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 CETA는 TSD 챕터를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대신, (i)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CTSD)를 통한 정부협의 절차와 (ii)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및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에 적용되는 전문가패널 절차를 규정⁵⁹⁾
 - CETA 제24장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제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불가. TSD 챕터의 '협력적' 성격이 CETA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평가됨. 이는 EU 측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반면 캐나다는 제재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① 미국의 FTA

● NAFTA 및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은 노동자 권리 보호 조항이 FTA와 결부된 최초의 사례임.

- 2001년 12월 발효한 미국·요르단 FTA부터는 협정 본문에 ILO 선언 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체결된 미국의 모든 FTA는 별도의 노동 챕터를 포함
- 특히 2007년 5월 부시 행정부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With America) 발표를 통해 당시 협상이 진행 중이던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을 제시
 - 이를 통해 미국의 FTA는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등 노동기준을 본문에 명시하고 노동 챕터에 FTA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의무 위반 시 이행부과금 부과, 호혜관세의 적용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함.
 - 한편 위 제재 조항은 NAALC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한 것. NAALC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패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⁶⁰⁾ 판정결과를 피제소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은 이행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⁶¹⁾ 피제소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피제소국을 상대로 NAFTA상의 혜택을 정지 가능⁶²⁾
- 위 규정은 2001년 체결된 미국·요르단 FTA에서 분쟁해결패널에 관한 조항을 통해 명문화되었으며 이후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과의 FTA에서는 분쟁해결절차가 (i) 정부간 협의 (ii) 합동 위원회(Joint Committee) (iii) 분쟁해결패널의 3단계로 세분화됨.⁶³⁾

● 한·미 FTA의 경우 제19장 노동 챕터를 통해 노동기준을 규정

- 2007년 4월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되었을 당시 노동 및 환경 챕터상의 의무불이행은 특별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6월의 추가협약에서 미국은 이를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일반분쟁해결절차로 전환
 - 같은 기간에 미국이 타결한 페루,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와의 FTA도 노동 분야의 분쟁해결에 있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59) CETA 제23.9조 및 제23.10조, 제24.14조 및 제24.15조.

60) NAALC 제29조.

61) NAALC 제39조 제4항.

62) NAALC 제41조.

63) 강유덕, 고보민(2016),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무역학회지』, 제41권 제3호, p. 11.

② EU의 FTA

- 2000년에 발효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서 노동조항이 처음 포함된 이래로, 2003년 발효한 EU·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협정문 본문에 국제노동기준(ILO 핵심협약)이 권고적 성격의 조항으로서 포함됨.
 - EU FTA 중 포괄적 노동조항을 포함한 첫 번째 협정은 2008년 카리브해 연안국들과 체결한 EU·CARIFORUM 경제동반자협정(EPA)임.
 - 2011년 잠정 발효한 한국과의 FTA부터는 노동과 환경기준을 조합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의 개념을 신설하여 정형화된 노동기준을 도입. (i) ILO 핵심협약을 통한 4대 노동기본권 명시 (ii) TSD 위원회 구성 (iii) 국내자문단(DAG) 구성 (iv) 시민사회 대화 운영 (v) 정부간 협의절차 (vi)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한 모든 FTA에는 한·EU FTA의 TSD 챕터와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TSD 챕터가 포함됨.

③ 우리나라의 FTA

- 한국의 FTA 중 별도의 노동 챕터를 통해 노동조항을 포함시킨 사례는 2007년 6월에 서명이 이루어진 한·미 FTA가 처음임.
 -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한 FTA에는 상당수가 노동조항을 포함
 - 한·미 FTA, 한·EU FTA 이후에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와 체결한 FTA는 노동 챕터가 포함되었고,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FTA에는 노동 챕터가 포함되지 않음.
 -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에 관한 논의를 미국과 EU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가 무역과 연계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기발효 FTA 내 무역-노동 기준 연계방식은 협상상대국에 따라 매우 유연한 입장을 보임.
 - 한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은 그 형식과 내용이 협정 상대국별로 상이. 즉 FTA 노동규범 포함 여부는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 체결한 FTA에는 별도의 노동 챕터가 포함되었고, 특히 미국과 EU가 체결한 FTA에서는 상대국의 무역-노동 기준 연계 방식을 수용
 - 반면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는 많은 경우 노동기준이 포함되지 않음.
 - 상대국이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이더라도 미국 또는 EU와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경우에는 한국 또한 그 국가와 노동기준을 포함한 FTA를 체결. 단, 미국이나 EU가 체결하는 FTA 내 노동기준과 외형은 비슷하더라도, 실제적 의무 수준과 절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확인됨.

표 4. 우리나라 기발효 FTA 노동 챗터의 주요 특징

	FTA 상대국	노동 챗터	ILO와의 관련성	이행체제	제제 및 이행부과금
1	칠레	×	-	-	-
2	싱가포르	×	-	-	-
3	EFTA	×	-	-	-
4	ASEAN	×	-	-	-
5	인도	×	-	-	-
6	EU	○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존중·증진·실현 약속	· TSD 위원회 설치 · 국내자문단 운영 ·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 제도	없음
7	페루	○	· ILO 기본권선언(1998)	· 노동협의회 설치 · 정부간 협의	없음
8	미국	○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유지 (+고용, 직업상 차별 금지)	· 노무협의회 설치 · 정부간 협의 후 공동위원회에 회부, 패널 설치 가능	· 이행부과금 요구 및 양허정지 가능
9	터키	○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유지 노력	· 공동위원회 운영 · 필요시 위원회·작업반 개설	없음
10	호주	○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유지 노력	· 정부간 협의절차 · 임시 위원회 개설 가능	없음
11	캐나다	○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외 추가적 보호조치 보장 (최소 고용기준, 직업상 안전, 이주노동자 보호)	· 장관급 노동 협의회 · 공중의견제출 제도 · 정부간 일반협의제도 · 검토패널 설치	· 이행부과금 요구 가능
12	중국	×	-	-	-
13	뉴질랜드	○	· ILO 기본권선언(1998) · ILO 사회정의 선언 (200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유지 노력	· 노동위원회 · 정부간 협의절차 규정	없음
14	베트남	×	-	-	-
15	콜롬비아	○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유지 노력	·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없음
16	중앙 아메리카	○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유지 노력	· 노동위원회	없음
17	영국	○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존중·증진·실현 약속	· TSD 위원회 설치 · 국내자문단 운영 ·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 제도	없음

주: 한·EU FTA, 한·터키 FTA,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노동 챗터가 아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챗터임.
 자료: 한·EU FTA 제13장, 한·페루 FTA 제18장, 한·미 FTA 제19장,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장, 한·호주 FTA 제17장, 한·캐나다 FTA 제18장, 한·뉴질랜드 FTA 제15장, 한·콜롬비아 FTA 제16장, 한·중미 FTA 제16장, 한·영 FTA 제13장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 FTA 추진 초기부터 거대경제권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노동, 환경과 같은 규제 이슈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FTA 이행 초기의 목표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출확대에 있었다면, 이후에는 노동, 환경 등 비무역 이슈가 점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국내 규제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외연의 통상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
- 2020년 말 기준 한국은 56개국과 17개의 FTA를 발효하였고, 향후 FTA와 체결국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통상정책은 각 FTA에 포함된 상이한 환경·노동 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를 과제 안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대표적인 사례가 한·EU FTA의 운영과정에서 부각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라 할 수 있음.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EU FTA 제13.14조에 따른 정부간 협의 절차를 요청, 정부간 협의를 2019년 1월 21일에 개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패널이 설치·구성,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됨.

4) FTA 노동규범의 최근 동향

① CPTPP 제19장 노동 챕터

● CPTPP 노동 챕터상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음.

- (i)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특히 ILO 기본선언에 규정된 노동권 관련 의무를 국내적으로 준수할 의무 재확인⁶⁴⁾ (ii)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의무⁶⁵⁾ (iii) ILO 기본선언에 포함된 ILO의 4대 핵심 노동권을 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에서 채택·유지할 의무⁶⁶⁾ (iv)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국 노동법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낮추지 않을 의무⁶⁷⁾ (v)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할 의무⁶⁸⁾ (vi)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억제할 의무⁶⁹⁾ (vii) 노동법 관련 행정·준사법·사법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적법절차를 보장할 의무⁷⁰⁾ 등

● CPTPP는 광범위한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무역 관련 노동기준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양자 FTA를 넘어 다자 FTA 차원에서의 노동규범 확립이라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권고적' 성격에 가까운 EU 방식의 무역-노동 기준 연계가 아닌, 미국 방식의 '강행적' 노동기준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노동기준의 이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

64) CPTPP 제19.2조 제1항.

65) CPTPP 제19.2조 제2항.

66) CPTPP 제19.3조 제1항.

67) CPTPP 제19.4조.

68) CPTPP 제19.5조 제1항.

69) CPTPP 제19.6조.

70) CPTPP 제19.8조.

-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무역-노동 기준 연계전략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
 - TPP 당시 미국이 협상을 주도함에 따라 미국의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 중 다수가 CPTPP에도 반영됨.
 - 미국은 TPP 추진 과정에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3개국과 노동개혁에 관한 부속협정을 체결, 이를 TPP 노동 챕터의 부속서에 포함시키는 등 CPTPP 회원국(특히 개발도상국)의 노동기준을 제고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CPTPP는 원안에 비해 노동조항의 실효성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압력이 상당 부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개발도상회원국의 현실적인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확인 가능
 - 예를 들어 △구체적인 ILO의 협약을 명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1998년 ILO 기본권선언을 ‘준용’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노동기준의 준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가 불확실한 점 △노동법 신설을 각국의 자발적 조치영역으로 규정한 점 △강제노동에 관해 ‘금지(prohibit)’ 의무 대신 ‘억제(discourage)’ 의무만을 규정한 점 △일반 시설과 수출가공지역에서의 노동기준 준수의무를 차별한 점 등은 노동권 보호의 관점에서는 한계로 지적됨.

② USMCA 제23장 노동 챕터

- 기본적으로 USMCA 노동 챕터는 CPTPP 노동 챕터를 기반으로 일부 내용을 강화시킨 형태(CPTPP plus)
 - (i)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특히 ILO 기본선언과 ILO의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에 따른 노동권리 관련 의무 재확인⁷¹⁾ (ii) ILO 기본선언에 포함된 ILO의 4대 핵심 노동권을 회원국의 법률·규정·관행에서 채택·유지할 의무⁷²⁾ (iii)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국 노동법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낮추지 않을 의무⁷³⁾ (iv)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할 의무⁷⁴⁾ (v)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의무⁷⁵⁾ (vi) 노동법 관련 행정·준사법·사법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적법절차를 보장할 의무⁷⁶⁾ 등
- 그 외 CPTPP 노동 챕터에는 없으나 USMCA 노동 챕터에 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CPTPP extra).
 - (i) 노동자와 노조가 폭력이나 위협,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⁷⁷⁾ (ii) 국적 불문, 당사국의 노동법하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의무⁷⁸⁾ (iii) 성별

71) USMCA 제23.2조 제1항.

72) USMCA 제23.3조 제1항.

73) USMCA 제23.4조.

74) USMCA 제23.5조 제1항.

75) USMCA 제23.6조.

76) USMCA 제23.10조.

77) USMCA 제23.7조.

78) USMCA 제23.8조.

(성희롱 관련 포함), 임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양육 책임에 근거한 고용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이행할 의무⁷⁹⁾

● 또한 '멕시코 내 노동자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노동자대표'에 관한 별도의 부속서⁸⁰⁾를 둬.

-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⁸¹⁾ 분쟁해결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⁸²⁾ 노동조합 내의 투표에 있어 자유와 비밀 보장⁸³⁾ 등을 위해 멕시코 정부가 관련 노동법을 개혁할 것을 요구
- 관련 입법이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USMCA의 발효가 지연될 수 있음을 규정⁸⁴⁾

● 2019년 12월 10일 개정의정서를 통한 USMCA 노동규범 개선사항

- (i) 노동의무 위반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 신설
 - USMCA 제24장 환경 챕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3장 노동 챕터에서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and investment)” 요건에 대한 일차적 입증책임이 전환됨.
 - 노동의무 위반이 있음을 제소국이 입증하는 경우, 피소국이 달리 반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분쟁당사국 사이에 무역 또는 투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
 - DR-CAFTA에서의 미국·과테말라 노동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하였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임.
- (ii) 노동 챕터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개선
 - USMCA 제24장 환경 챕터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정의정서는 제23장에 따른 노동분쟁에 대한 패널설치 이전에 자유무역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⁸⁵⁾ 피소국이 일방적으로 패널절차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분쟁해결절차 규칙을 개선
 - 피소국이 패널리스트 선정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제소국은 모든 패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안을 심리할 패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⁸⁶⁾
- (iii) 모니터링 제도의 강화
 -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이 부속서 31-A⁸⁷⁾ 및 31-B⁸⁸⁾에 신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부인된 건과 관련하여 대상

79) USMCA 제23.9조.

80) USMCA Annex 23-A: Worker Represent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in Mexico.

81) USMCA 부속서 23-A 제2항 제(a)호.

82) USMCA 부속서 23-A 제2항 제(b)호.

83) USMCA 부속서 23-A 제2항 제(c)호.

84) USMCA 부속서 23-A 제3항.

85) USMCA 제23.32조(분쟁해결) 제1항에 관련하여, USMCA 개정의정서 제5항 제3호 (i)목.

86) USMCA 제31.9조(패널 구성) 제1항에 관련하여, USMCA 개정의정서 제7항 제D호.

87) USMCA 부속서 31-A: 미국-멕시코 간 특정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

88) USMCA 부속서 31-B: 캐나다-멕시코 간 특정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

시설에 대해 정부 조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패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됨.

- USMCA 노동 관련 조항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규범적 목표 외에도 뚜렷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가짐.
 - USMCA는 NA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⁸⁹⁾ USMCA 제4장 원산지규정 챕터의 부속서 4-B는 자동차 관련 상품에 대한 특별 원산지 규정을 명시함에 있어 노동부가가치(LVC: Labor value content) 요건을 부과
 - 특혜관세 적용의 조건으로 자동차 생산 시 특정 부품의 45%가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에 의해 생산될 것을 규정하는 최저임금 조건을 부과
 - 북미에서의 자동차 교역이 최저임금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USMCA에서가 최초임.
 -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평균임금은 2017년 시간당 7.34달러에 불과하며 부품생산 기업의 경우 3.41달러에 불과⁹⁰⁾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LVC 요건의 부과는 사실 멕시코 생산공장의 임금수준을 올림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멕시코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③ EU·캐나다 CETA 제22장 TSD 챕터 및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 EU·캐나다 CETA는 제22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 외에도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를 통해 각각 노동과 환경 관련 기준을 규정
 - CETA 제22장은 양측 고위대표로 구성된 TSD 위원회의 설립과 시민사회 대화 운영을 규정하고, 제23장은 노동권에 관련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제23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89) 보다 구체적으로, USMCA 제4장(원산지규정)은 승용차·소형트럭, 승용차나 소형트럭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역내 부가가치(RVC) 요건을 62.5%에서 75%로(Appendix to Annex 4-B, 제3조), 대형트럭 및 그 부품에 대한 역내 부가가치(RVC) 요건을 60%에서 70%로(Appendix to Annex 4-B, 제4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생산에 들어간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가 북미지역을 원산지로 할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요건을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부과하였으며(Appendix to Annex 4-B, 제6조), USMCA는 처음으로 자동차 교역에 있어 '최저임금' 요건을 규정하였다. 즉 생산과정의 최소 40% 이상에 대해 시간당 16달러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노동부가가치(LVC)' 요건을 규정하였다(Appendix to Annex 4-B, 제7조).

90) Dzikzek *et al.*, "NAFTA Briefing: Review of current NAFTA proposals and potential impacts on the North American automotive industry,"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April 2018, p. 4, https://www.cargroup.org/wp-content/uploads/2018/04/nafta_briefing_april_2018_public_version-final.pdf(검색일: 2020. 7. 17).

표 5. CETA 제23장 무역과 노동 챗터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규제권한 (제23.2조)	· CETA 제23장은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자신의 노동 우선순위와 보호수준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 높은 수준의 노동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국 환경법의 지속적인 개선 약속
다자 노동기준 및 협약 (제23.3조)	· CETA하에서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1988년 ILO 기본노동권 선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원칙 ⁹¹⁾ 을 존중·촉진할 것을 약속 ·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 수락 가능한 최저 고용기준, 근로조건에서의 비차별(특히 이주노동자 관련) 등 촉진 약속
보호수준의 유지 (제23.4조)	· 무역·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노동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해서는 안 될 의무(제2항) · 무역·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 법·기준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의무(제3항)
집행절차 및 행정조치 (제23.5조)	· 국제적 의무에 따라 근로감독(labour inspection) 제도를 유지하는 등 국내 노동법의 실효적 집행 약속(제1항) · 자신의 국내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행정·사법 절차를 실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가 공정·공평하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제2항)
협력활동 (제23.7조)	· 무역과 노동 챗터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제1항) - 모범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무역 관련 노동 이슈에 관해 WTO, ILO 등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협력, 각 당사자가 체결한 무역협정 내 노동조항에 관한 정보 교환 등
제도적 메커니즘 (제23.8조)	· 시민사회 단체가 무역과 노동 챗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당사자가 국내 노동 및 지속가능발전 자문단과 협의할 것을 규정(제4항) · 제23장 무역과 노동 챗터 관련 사안에 대해 민간 제출 의견서(이행에 대한 의견서 포함)를 충분히 고려할 의무(제5항)
협의 및 분쟁해결 (제23.9조 및 제23.10조)	· 일방당사자는 무역과 노동 챗터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 협의 요청 가능(제23.9조 제1항) · 위 협의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전문가패널(3인 구성)이 해당 사안을 검토(제23.10조 제1항·제3항) · 패널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급. 보고서에는 무역과 노동 챗터 의무와의 합치성에 관한 패널 조사 결과, 결정 및 권고사항이 포함(제11항) · 위반이 없다고 최종보고서에서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는 패널보고서에 따라 사안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거나 또는 상호 만족스러운 행동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제12항) · 분쟁해결 조항 재검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재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CTSD)는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음.

자료: Government of Canada, "Chapter Summaries: 23. Trade and Labour,"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eta-aecg/chapter_summary-resume_chapitre.aspx?lang=eng#a23(검색일: 2020. 10. 6)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5)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 이론적으로 볼 때, 기존의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져 결과적으로 무역협정의 체결 가능성이 커지고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연계 되는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됨.
 - 또한 FTA 분쟁해결 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차별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신통상규범이 포함된 FTA의 체결은 양국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대체로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교역증대에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91)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아동노동 철폐,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철폐, 강제노동 폐지 등.

- 선진국간 교역의 경우에도 환경규범의 구속력 강화는 양국간 교역증대를 유도하였고, 구속력 있는 환경·노동 규범은 국내 환경 노동지수를 개선
- 환경과 노동조항의 도입과 강화가 무역을 위축시키는 정도가 유의하게 크지 않고 오히려 무역협정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교역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강화된 규범 도입 확대를 설명할 수 있음.

-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다음 기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
 - 이슈연계형 협정 도입에 따라 사회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던 환경과 노동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이슈연계형 협정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줌.

3. 정책 제언

① FTA 환경·노동 규범의 강화 전망

● FTA 환경·노동 의무 자체에 대한 강화

- FTA 환경·노동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문구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EU는 무역협정에 국제 환경·노동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지는 않았고, FTA 협상상 대국 입장에서도 환경·노동 기준을 무역협정 내에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그 결과 많은 경우 핵심 국제기준만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의무만이 매우 연성화된 방식으로 무역협정에 반영

● FTA 환경·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강화

- 환경·노동 의무를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
 - FTA 의무의 이행·집행 문제는 환경·노동 규정을 넘어 협정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특히 환경·노동 등 비무역적 성격의 FTA 의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보임.
- [미국] FTA 환경·노동 의무의 실효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옴.
 - △FTA 노동 챗터의 위반 성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추정 규정 신설 △분쟁해결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개선 △멕시코 측 FTA 노동의무 모니터링 메커니즘 강화 등이 USMCA 개정의정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음.

- TPP 협상 당시에도 미국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3개국과 TPP 노동 챗터에 부속되는, 노동개혁에 관한 부속협정을 체결. 동 부속협정은 당사국이 충족시켜야 하는 노동기준을 구체화하고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며, 일방 당사국의 의무 미준수에 대해 미국이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EU] TSD 챗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EU의 FTA는 대화와 협력에 주목하면서 제재 중심의 미국 FTA보다 연성화된 접근법을 취해 왔는데, 그로 인해 집행 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환경·노동 의무 불이행에 대해 좀 더 제재 위주의 미국식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한·EU FTA 노동분쟁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EU의 입장이 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임.

② EU FTA TSD 챗터의 집행 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전망

● EU가 향후 신규 FTA 협상이나 FTA 개선협상에서 TSD 챗터의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크게 네 가지 옵션이 논의되어 있음.

- ‘민약’ 2021년 1월 25일 발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최종 판단과 권고사항의 해석과 한국 측 이행 여부에 관해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향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EU가 후술하는 집행 가능성 제고 방안(무역조치 등)을 우리나라를 상대로 처음으로 적용할 가능성⁹²⁾
 - 다만 2021년 2월 26일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의 국회 통과로 인해 상기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보임.
- [옵션①] 환경·노동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FTA를 정지·종료시키는 방안
 -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 및 EU사법재판소(CJEU)의 Opinion 2/15⁹³⁾를 응용하여, “TSD 챗터의 실질적 위반”을 이유로 FTA를 정지·종료하는 안이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바 있음.
 - 다만 EU 집행위는 “무역재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확인되고 현행 TSD 챗터 모델을 지지하는 입장이 다수”이며, “제재를 기초로 하는 모델에 대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없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옵션은 아님.

92) 참고로, EU가 자국 FTA 내 TSD 챗터 분쟁해결제도를 발동한 것이 한·EU FTA에서가 처음임.

93) Opinion 2/15(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of 16. 5. 2017 Pursuant To Article 218(11) TF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62015CV0002\(01\)&from=EN](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62015CV0002(01)&from=EN)(검색일: 2020. 9. 15).

- [옵션②] 무역장벽규정을 통해 FTA 환경·노동 의무 위반국에 무역조치를 부과하는 방안
 - EU의 무역장벽규정(TBR: Trade Barrier Regulation)을 통해 TSD 챕터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의견이 있으나, 노동 기준은 현행 규정상 TBR을 통해 집행 가능한 권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FTA 노동의무 불이행에 TBR이 적용될 수 없으며 TBR의 추가 개정이 필요
- [옵션③] EU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하에서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방안
 - EU가 제공해 온 일방적 무역특혜의 철회가 FTA 환경·노동 의무 불이행국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 EU의 현행 GSP 규정(GSP Regulation)의 부속서8 제A부에 열거된 인권 및 노동권에 관련된 핵심협약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 EU가 동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 것
 - 그러나 TSD 챕터 ‘환경’ 의무에 관해 EU가 자신의 GSP를 통해 GSP 수혜국의 의무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한정적임. UNFCCC, CITES 등 환경협정은 위 무역특혜 철회대상이 현행 EU GSP 규정상 될 수 없기 때문
 - 또한 EU GSP에 따른 무역특혜는 특정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EU GSP가 가지는 영향력은 한정적
- [옵션④] 신설된 통상감찰관제도 및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한 무역조치 부과 가능성
 - 현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시화된’ 옵션은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제도라고 생각됨.
 - 통상감찰관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의무, 특히 기후변화와 노동권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 감독·개선 작업 및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정기 보고 △WTO 소송 △다자투자법원(MIC: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등 그 밖의 다자간 법률 프로젝트 △EU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스크리닝 제도 감독 △무역구제(Trade Defence) 조사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
 - 통상감찰관을 통해 FTA 환경·노동 의무 위반을 감독하고 그에 관해 협의하는 기능은 개선될 수 있으며, EU가 FTA 타방 당사국들의 환경·노동 의무 위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음.
 - 다만 그러한 일방조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이 무역협정 타방 당사국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관세양허 정지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분명.⁹⁴⁾ 2020년 7월 6일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향후 무역집행규정에 대해 추가 재검토를 할 경우 “지속가능발전 의무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⁹⁵⁾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개정을

94) 최근 2021년 2월 12일에 완료된 개정의 경우, 개정의 초점은 WTO/FTA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집행 가능성 확보가 아니라, 일방 분쟁당사자가 WTO/FTA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법적 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분쟁해결절차를 고의적으로 막는 경우에 있었음.

95)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EU) No 654/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을 통해 환경·노동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역조치 부과와 법적 근거 마련이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

③ EU와 미국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 [EU] 최근 몇 년간 FTA의 '환경'적 측면을 강화하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

- EU는 이미 2015년 10월 'EU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all)'에서 FTA로부터의 규제적 보호 수준을 향후 상향 조정해나갈 것이며 무역협정을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사용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음.
- 2019년 12월 11일의 '유럽 그린딜'에서는 2030년 기후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⁹⁶⁾ 2050년까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즉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것임을 목표로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환경목표 달성에 FTA가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
 - 2021년 1월 1일부로 잠정 적용되고 있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재균형(Rebalancing)' 메커니즘⁹⁷⁾이 여기에 해당될 것

●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기후변화 의무가 미국이 체결하는 FTA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음.

- 탄소배출, 기후변화 완화의무, 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조항이 향후 새로운 무역 협상·협정 모델로서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미국 FTA 환경 챕터 모델의 약점으로 지적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대외 기후·통상 정책에 큰 틀에서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i) 미국의 기후목표와 통상정책을 연계시킬 것이며 (ii) 파리협정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하지 않는 국가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이고 (iii) 국제적으로 기후·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탄소다배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집약상품에 대해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또는 수량제한(쿼터)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다만 현행 무역촉진권한(TPA 2015)⁹⁸⁾하에서 미 행정부는 국내적인 탄소감축 의무로 이어질

Council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COM(2019)0623 - C9-0197/2019 - 2019/0273(COD)), 2020.7.6., Amendment 22: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after ...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mending regulation], but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at date, the Commission shall review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the commercial policy measures that may be adopted, as well as its implementation, and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at review shall include proposals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ments." [밑줄 추가]

96)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50~55% 감축.

97) EU-영국 TCA 제9.4조.

98) See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 Title I of Pub. L. 114-26(June 29,

수 있는 내용을 무역협정에 포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 현행 TPA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⁹⁹⁾ 이후 의회의 TPA 재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새로운 TPA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탄소조정세’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구체화가 필요해 보임. 미국은 현재 연방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내적인 탄소배출 감축 방안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아직 밝힌 바 없음.
- 가장 최근의 2021년 『무역정책의제 및 2020년 연례보고서』(2021. 3. 1)에서도 미국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탄소배출 저감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 않음.
 -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동맹·협력국들과 공조’할 것임을 약속하고 △국제무역제도하에서 탄소배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장·규제적 접근법을 검토하고,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으며 △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검토할 경우 “미국이 국내적으로 도입할 탄소배출 저감 방식과 일관된(consistent)” 방식으로 설계할 것이라 언급한 수준에 그침.
 - 미국 국내적으로 탄소저감 제도의 방향과 내용이 일정 수준 가시화될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미 행정부의 원론적 입장만을 확인하고 CBAM 등 구체적 무역 제도·조치에 대해서는 유보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무역구제(특히 상계조치)를 기후문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함.
 - 미 의회 차원에서 탄소세제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연방법률을 제정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상원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입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
 - FTA 신규 체결·개정을 통한 환경 목표 제고에도 원칙적으로 협상대상국 상호간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 협상에 보통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서 단기적인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구제법, 특히 상계조치를 통해 다루려 할 가능성이 있음. 2020년 12월 11일에 미 상무부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적으로 공여받은 일부 시설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음.¹⁰⁰⁾
 - 대미 수출품목 중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산업부문에

2015), 129 Stat. 319, 320-361.

99) CRS, “Trade Promotion Authority(TPA),” IN FOCUS(2020. 12. 14), p. 1, <https://fas.org/sgp/crs/misc/IF10038.pdf> (검색일: 2020. 12. 18).

100) EU ETS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배출집약도 최상위 시설 기준 44.2% 수준으로 보통 무상할당이 이루어지는 반면, 탄소수출 목록에 포함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이 공여되는 것은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논리임. USDOC IT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428-848, December 7, 2020, pp. 48-50,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germany/2020-27335-1.pdf>(검색일: 2020. 12. 27); USDOC IT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Italy,” C-475-841, December 7, 2020, pp. 13-15,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italy/2020-27336-1.pdf>(검색일: 2020. 12. 27).

대한 제도적 개선 여지 검토 및 미국 내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유사 맥락에서, 미국은 2020년 12월 17일에 WTO 일반이사회에 기본적인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WTO 회원국은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 다른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WTO 각료결정 초안 형식으로 제출¹⁰¹⁾

④ 다자환경협정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필요

- 미국은 앞으로의 FTA 신규 및 개정 협상에서 USMCA 환경 챕터 수준을 협상당사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나,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미국이 환경보호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협의 또는 협상을 근시일 내에 요구할 가능성이 현시점에서 높지 않음.

- (i) 2018년에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이미 한 차례 완료되었으며 (ii)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챕터 법 규정의 '큰 틀'은 미국이 주도하는 USMCA 수준의 환경규범에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iii)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챕터는 이미 자체적으로 환경협의 및 협의회 회합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¹⁰²⁾ 이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 협정 제22장 분쟁해결 챕터에 따른, 법적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제도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일정 수준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

-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기확립된 한·미 FTA 환경 챕터의 집행 체제를 '실제 활용'하는 데 미국의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

- 미국이 중요시 여기는 일정 환경적 가치에 대해 한국의 의무 이행수준을 담보·강화하고 관련 국내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FTA 환경 챕터의 집행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일례로, 2019년 9월 19일 미국은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한·미 FTA 환경 챕터를 통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가속화되었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될 것

- 다자환경협정(MEAs)의 국내적 이행 촉진에 FTA가 활용될 가능성

- 한·미 FTA뿐 아니라,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 환경 챕터, TSD 챕터에서 다자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우리나라 기발효 FTA 중 한·EU,¹⁰³⁾ 한·페루,¹⁰⁴⁾ 한·미,¹⁰⁵⁾ 한·호주,¹⁰⁶⁾ 한·캐나다,¹⁰⁷⁾ 한·

101) General Council, Advancing Sustainability Goals through Trade Rules to Level the Playing Field - Draft Ministerial Decision, WT/GC/W/814, 17 December 2020, paras. 1-2.

102) 한·미 FTA 제20.9조(환경 협의 및 패널 절차) 제1항 내지 제3항.

103) 한·EU FTA 제13.5조(다자간 환경협정) 제2항.

104) 한·페루 FTA 제19.3조(다자간 환경협정) 제2항.

중,108) 한·뉴질랜드,109) 한·콜롬비아,110) 한·중미,111) 한·영112) FTA 등 10개 FTA에서 다자 환경협정에 따른 환경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의무 또는 그러한 의무를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협의의무113)를 규정

- 이들 10개 FTA 중 다자환경협정의 목록을 망라적으로 규정하여 다자환경협정 국내적 이행의무의 범위를 좁혀놓은 것은 [표 6]에서와 같이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뿐임.

표 6. 한국의 FTA에 포함된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의무

	FTA 상대국(발효)	MEAs 국내적 이행의무	MEAs 목록 유무 (협정 수)		FTA 상대국(발효)	MEAs 국내적 이행의무	MEAs 목록 유무 (협정 수)
1	칠레(2004)	X	X	10	호주(2014)	△	X
2	싱가포르(2006)	X	X	11	캐나다(2014)	○	○ (5건)
3	EFTA(2006)	X	X	12	중국(2015)	○	X
4	ASEAN(2007)	X	X	13	뉴질랜드(2015)	△	X
5	인도(2010)	X	X	14	베트남(2015)	X	X
6	유럽연합(2011)	○	X	15	콜롬비아(2016)	○	X
7	페루(2011)	○	X	16	중미(2019)	○	X
8	미국(2012)	△	○ (7건)	17	영국(2020)	○	X
9	터키(2013)	X	X				

주: 1) ○는 FTA 당사국이 당사자인 MEAs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명시한 경우, X는 그러한 조항이 부재한 경우, △은 상기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MEAs와 무역협정의 상호지지를 위해 양 당사국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환경사안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규정한 경우를 의미함.

2) 일부 FTA의 경우 '협력' 조항에서 MEAs와 무역 관련 측면에서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보통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MEAs 이행 의무가 FTA상에서 통상분쟁화 될 가능성 유무를 검토하려는 본고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위 표의 목적에서는 무시함.

자료: 저자 정리.

- 한·미 FTA의 경우 USMCA 제24장 환경 챕터와 동일하게 (i) CITES (ii) 몬트리올 의정서 (iii)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Annex I / II) (iv) 1971년 습지보존협약(람사르협약) (v)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vi) 남극해

105) 한·미 FTA 제20.10조(다자간 환경협정과과의 관계). 단, 한·미 FTA는 직접적으로 국내적 이행의무를 규정하지는 않고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협정의 상호지지를 증진하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제1항), 이를 위해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사안에 대한 협상을 양 당사국이 협의할 것을 규정(제2항).

106) 한·호주 FTA 제18.2조(다자간 환경협정). 단, 한·호주 FTA는 직접적으로 국내적 이행의무를 규정하지는 않고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협정의 상호 지지하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제1항), 적절한 경우 이를 위해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 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을 양 당사국이 협의할 것을 규정(제2항).

107) 한·캐나다 FTA 제17.3조(다자간 환경협정) 제2항.

108) 한·중 FTA 제16.4조(다자간 환경협정) 제3항.

109) 한·뉴질랜드 FTA 제16.3조(다자간 환경협정). 단, 한·뉴질랜드 FTA는 직접적으로 국내적 이행의무를 규정하지는 않고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칙의 상호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제2항).

110) 한·콜롬비아 FTA 제16.4조(구체적 약속) 제2항.

111) 한·중미 FTA 제17.4조(구체적 약속) 제5항. 다만, 노력의무 조항('shall endeavor')으로 규정되어 있음.

112) 한·영 FTA 제13.5조 제2항.

113) 다자환경협정과 관련된 환경사안에 관한 협상을 당사국간에 협의할 의무.

양생물자원 보존 협약(CCAMLR) (vii)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IATTC) 등 7개 다자환경협정을 열거하고¹¹⁴⁾ 이들 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를 규정.¹¹⁵⁾ 2019년 9월 19일 미국의 한·미 FTA 환경협의 요청 건도 7개 협정 중 하나인 CCAMLR의 위반이 문제된 건임.

- 한·캐나다 FTA는 (i) CITES (ii) 몬트리올 의정서 (iii)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iv)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v)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등 5개 다자환경협정을 열거하고¹¹⁶⁾ 그 국내적 이행의무를 규정¹¹⁷⁾
- 반면 나머지 7개 FTA에서는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¹¹⁸⁾을 규정하거나 심지어 양 당사국이 다자환경협정의 당사국일 필요도 없이 ‘자국(FTA 일방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¹¹⁹⁾을 규정한 경우도 있어,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의무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¹²⁰⁾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주요 다자환경협정 가입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음.

표 7. 한국의 FTA 상대국들의 주요 다자환경협정 가입 현황(예시)

	CITES ¹²¹⁾	CCAMLR ¹²²⁾	UNFSA ¹²³⁾	CBD ¹²⁴⁾	MP ¹²⁵⁾	UNFCCC · KP ¹²⁶⁾	PA ¹²⁷⁾	BC ¹²⁸⁾	RC ¹²⁹⁾	SC ¹³⁰⁾
한국	○	○	○	○	○	○	○	○	○	○
칠레	○	○	○	○	○	○	○	○	○	○
싱가포르	○	x	x	○	○	○	○	○	○	○
E F T A	스위스	○	x	x	○	○	x	○	○	○
	노르웨이	○	○	○	○	○	○	○	○	○
	아이슬란드	○	x	○	○	○	○	○	x	○
	리히텐슈타인	○	x	x	○	○	x	○	○	○

114) 한·미 FTA 제20장(환경), Annex 20-A(적용대상 협정), 제1항. 한편 당사국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자환경협정 목록을 확대하는 것 또한 가능함. Annex 20-A, 제2항.

115) 한·미 FTA 제20.2조.

116) 한·캐나다 FTA 부속서 1-A(다자환경협정).

117) 한·캐나다 FTA 제17.3조 제2항.

118)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한·페루 FTA 제19.3조 제2항, 한·미 FTA 제20.10조 제1항, 한·호주 FTA 제18.2조 제1항, 한·캐나다 FTA 제17.3조 제2항, 한·중 FTA 제16.4조 제3항, 한·뉴질랜드 FTA 제16.3조 제2항 참고.

119)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which it is a party”. 한·콜롬비아 FTA 제16.4조 제2항, 한·중미 FTA 제17.4조 제5항 참고.

120) FTA 일방 당사국(A국)만이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까지 국내적 이행의무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FTA 타방 당사국(B국)은 자신은 당사국이 아닌 다자환경협정에 대해서도 A국의 국내적 이행 여부를 문제삼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짐.

12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973년 채택, 1975년 발효.

12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0년 채택, 1982년 발효.

123)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UN Fish Stocks Agreement). 1995년 채택, 2001년 발효.

표 7. 계속

	CITES	CCAMLR	UNFSA	CBD	MP	UNFCCC · KP	PA	BC	RC	SC
인도	○	○	○	○	○	○	○	○	○	○
유럽연합	○	○	○	○	○	○	○	○	○	○
페루	○	○	x	○	○	○	○	○	○	○
미국	○	○	○	x	○	x	x	x	x	x
터키	○	x	x	○	○	○	x	○	x	○
호주	○	○	○	○	○	○	○	○	○	○
캐나다	○	○	○	○	○	x	○	○	○	○
중국	○	○	x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베트남	○	x	x	○	○	○	○	○	○	○
콜롬비아	○	x	x	○	○	○	x	○	○	○
중미	파나마	○	○	○	○	○	○	○	○	○
	코스타리카	○	x	○	○	○	○	○	○	○
	과테말라	○	x	x	○	○	○	○	○	○
	온두라스	○	x	x	○	○	○	○	○	○
	엘살바도르	○	x	x	○	○	○	○	○	○
	니카라과	○	x	x	○	○	○	x	○	○
영국	○	○	○	○	○	○	○	○	○	○
WTO 회원국 중 해당 MEA 당사국 수	160	35	75	160	161	159	135	155	142	154

주: CITES, CBD, MP, BC의 경우 원조약에 대한 추가 개정서(Amendment) 또는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의정서(Protocol)가 있으나 [표 5-2]에서는 본 조약에 대한 가입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봄.

자료: CTE · CTESS, “Matrix on Trade-Related Measures Pursuant to Select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WT/CTE/W/160/Rev.8, TN/TE/S/5/Rev.6, 9 October 2017, pp. 183–193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 124)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채택, 1993년 발효.
- 125)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P: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87년 채택, 1989년 발효. 이후 (i) 런던 개정(1990년 채택, 1992년 발효, 197개 당사국) (ii) 코펜하겐 개정(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197개 당사국) (iii) 몬트리올 개정(1997년 개정, 1999년 채택, 197개 당사국) (iv) 북경 개정(1999년 채택, 2000년 발효, 197개 당사국) (v) 키갈리 개정(2016년 채택, 2019년 발효, 104개 당사국) 등 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짐.
- 12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KP: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 127)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 2015년 채택, 2016년 발효.
- 128)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89년 채택, 1992년 발효.
- 129)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년 채택, 2004년 발효.
- 1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01년 채택, 2004년 발효.

- 다만 위 규정으로 인해 향후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불이행을 이유로 한 FTA 남소가 우려된다는 의미는 아님.
 - 위 10개 FTA 중 한·미 FTA를 제외한 한·EU,¹³¹⁾ 한·페루,¹³²⁾ 한·호주,¹³³⁾ 한·캐나다,¹³⁴⁾ 한·중,¹³⁵⁾ 한·뉴질랜드,¹³⁶⁾ 한·콜롬비아,¹³⁷⁾ 한·중미,¹³⁸⁾ 한·영¹³⁹⁾ FTA에서는 TSD 또는 환경 챗터하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FTA 일반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
 - 따라서 이들 9개 FTA하에서는 다자환경협정을 국내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FTA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되지는 않을 것
- 반면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챗터에서는 환경협의를 거친 이후 동 협정의 일반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 우리나라 선박의 IUU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 제기하였던 환경협의를 경우 일반분쟁해결절차 회부 이전에 우리나라의 조속한 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한·미 FTA에 규정된 7개 다자환경협정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한국 측 의무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도 미국은 한·미 FTA 일반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의무이행을 담보하려 할 수 있음.
 - 미국은 특히 수산보조금과 IUU 어업 문제에 있어 WTO 다자 및 FTA 양자 협상 모두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므로 한·미 FTA 환경 챗터를 통해 우리 선박의 어업활동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환경의무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일반분쟁해결절차 미적용 조항을 규정한 8개 FTA의 경우에도 우려사항이 없는 것은 아님.
 - 한·EU FTA¹⁴⁰⁾나 한·캐나다 FTA¹⁴¹⁾에서와 같이 FTA 일반분쟁해결절차 외에 환경 챗터 내에 별도의 특별분쟁해결절차를 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전문가패널 절차를 통해 비록 법적 구속력 있는 판정이 발급되지는 않고 판정내용의 이행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협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방 당사국(승소국)에 의한 '사실상의'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유사 맥락에서, FTA 분쟁해결절차 개시 자체만으로도 피소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일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131) 한·EU FTA 제13.16조(분쟁해결).

132) 한·페루 FTA 제19.14조(분쟁해결).

133) 한·호주 FTA 제18.9조(분쟁해결).

134) 한·캐나다 FTA 제17.15조(분쟁해결). 단, 동 FTA 제17장 환경 챗터는 챗터 자체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전문가패널 절차를 두고 있음. 제17.12조(정부간 협의) 및 제17.13조(전문가패널) 참고.

135) 한·중 FTA 제16.9조(분쟁해결의 비적용).

136) 한·뉴질랜드 FTA 제16.9조(협의) 제9항.

137) 한·콜롬비아 FTA 제20장(분쟁해결) 제20.2조(적용범위) 제1항.

138) 한·중미 FTA 제17.1조(배경 및 목적) 제5항.

139) 한·영 FTA 제13.16조(분쟁해결).

140) 한·EU FTA 제13.14조(정부간 협의) 및 제13.15조(전문가패널).

141) 한·캐나다 FTA 제17.12조(정부간 협의) 및 제17.13조(전문가패널).

- 일례로, 최근까지 전문가패널 절차가 진행되었던 한·EU 노동 분쟁과 관련해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EU FTA의 TSD 챕터는 전문가패널의 권고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 이행하더라도 제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U는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 등 역내 근거규정 개정을 통해 FTA 타방 당사국에 의한 환경·노동 의무 불이행에 무역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옴.

● FTA 당사국간 환경사안 관련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환경법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FTA 당사국 상호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준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

- 우리나라는 CITES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⁴²⁾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¹⁴³⁾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은 「해양환경관리법」, 람사르협약은 「습지보전법」,¹⁴⁴⁾ ICRW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⁴⁵⁾ 「수산업법」,¹⁴⁶⁾ 「수산자원관리법」,¹⁴⁷⁾ CCAMLR는 「원양산업발전법」, IATTC는 「수산업법」,¹⁴⁸⁾ 「수산자원보호령」¹⁴⁹⁾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이행 중임.
- 환경 관련 법령의 이행을 FTA 당사국 상호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준수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FTA 당사국간에 환경사안 관련 통보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FTA 환경규범 및 집행 가능성 강화로 인해 수반되는 불필요한 FTA 통상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KIEP**

1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제14조(보호시설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 기록),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14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등(“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4) 「습지보전법」 제1조(목적) 등(“이 법은 ...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제1항.

146) 「수산업법」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147)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148) 「수산업법」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1항 제5호(“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 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149) 「수산자원보호령」 제3조 제2항(“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